

2025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 기준(적용시기: '25.2.~)

「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」 제2조제4항 관련

○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기준

(단위 : 원)

| 가구원 수 | 지역 | | 직장 | | |
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| 보험료 순위 | | 보험료 순위 | | 재산과표액 (세대원 합산) |
| | 25% | 50% | 25% | 50% | |
| 1명 | 19,780원 이하 | - | 74,090원 이하 | 74,090원 초과 98,040원 이하 | 122,000,000 |
| 2명 | 19,780원 이하 | 19,780원 초과 77,220원 이하 | 81,960원 이하 | 81,960원 초과 122,240원 이하 | 207,000,000 |
| 3명 | 22,560원 이하 | 22,560원 초과 89,750원 이하 | 96,880원 이하 | 96,880원 초과 152,940원 이하 | 268,000,000 |
| 4명 | 30,130원 이하 | 30,130원 초과 101,850원 이하 | 113,440원 이하 | 113,440원 초과 183,700원 이하 | 329,000,000 |
| 5명 | 33,610원 이하 | 33,610원 초과 114,350원 이하 | 138,500원 이하 | 138,500원 초과 211,670원 이하 | 389,000,000 |
| 6명이상 | 49,270원 이하 | 49,270원 초과 148,470원 이하 | 159,520원 이하 | 159,520원 초과 232,190원 이하 | 450,000,000 |

- 1) 보험료는 부과보험료가 아닌 산정보험료이며,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음
- 2) 직장세대는 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감경 적용
- 3) 직장세대 산정보험료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제4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(가입자부담 보험료만 해당)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
- 4) 재산과표액은 「지방세법」 제105조에 따른 토지, 건축물, 주택,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, 세대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
- 5) 임의계속가입세대의 보험료는 「보험료경감고시」 제9조에 따른 경감(100분의 50) 후 금액으로 함
- 6) 위 감경적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「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」 제2조의2에 해당되는 대상은 감경적용이 제외됨